

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박성숙 의원 (대표)발의]

의안 번호	196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8월 14일

발 의 자 : 박성숙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동승, 김용석(서초)  
김제리, 김현기, 남재경,  
남창진, 우창윤, 이복근,  
주찬식 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행해지는 행사 중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을 위해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
- 「스포츠산업진흥법」 제17조제6항(연고구단과의 수의계약 가능)이 2016년 8월 시행되어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부칙 제3조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위법과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며,
- 법제처의 「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와 표현을 수정함.

## 2. 주요골자

-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행해지는 행사 중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을 위해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의2).
-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함(안 부칙 제2조 ~ 제3조).
- 법제처의 「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」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수정하여 정리함(안 제2조 ~ 제5조, 제7조 ~ 제9조, 제11조의2, 제12조, 제15조, 제16조, 제20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사항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사항 :

#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적합하게”를 “맞게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이용하고자 하는”을 “이용하려는”으로 하고 “부여되도록”을 “주어지도록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안전한 환경의 유지·관리 등) 시장, 수탁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2. 체육시설 내에서 장애인·노인 또는 아동 실종 등의 사고발생을 인지하여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 진행중인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3.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제2호의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사용하고자 하는”을 “사용하려는”으로 하고, “변경하고자 하는”을 “변경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전용사용하고자 하는”을 “전용사용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규정에”를 “규정에도”로 한다.

제8조 제목 “(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)”를 “(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)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규정에”를 “규정에도”로 한다.

제11조의2제2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제1호 중 “현저한”을 “뚜렷한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설치하고자 하는”을 “설치하려는”으로 하고, “소요되는”을 “드는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연장하고자 하는”을 “연장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5항 중 “위탁받하고자 하는”을 “위탁받으려는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9항 중 “언거나 계약 시”를 “받거나 계약한 때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설치하고자 하는”을 “설치하려는”으로 하고,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한다.

조례 제5994호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설치) 이 조례에 <u>의하여</u> 설치·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·기능 및 그 위치는 “별표1”과 같다.</p>	<p>제2조(설치)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(관리·운영의 일반원칙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체육시설을 관리·운영(이하 “운영”이라 한다)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<u>적합하게</u> 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관리·운영의 일반원칙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맞</u> <u>게</u> -----</p>
<p>제4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)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,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<u>이용하고자 하는</u>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<u>부여되도록</u> 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</p>	<p>제4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용하려는</u> ----- ----- ----- <u>주어지도록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〈신 설〉</p>	<p>제4조의2(안전한 환경의 유지·관리 등) <u>시장, 수탁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</u> <u>1.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<u>2. 체육시설 내에서 장애인·노인 또는 아동 실종 등의 사고발생을 인지하여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 진행중인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</u> <u>3.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제2호의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사용허가) ① 체육시설을 <u>전용사용하고자 하는</u>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<u>변경하고자 하는</u>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~ ③ (생략)</p>	<p>제5조(사용허가) ① ----- <u>사용하려는</u> ----- <u>변경하려는</u> ----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사용료) ① (생략) ② 체육시설을 <u>전용사용하고자 하는</u> 자는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사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,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의 <u>규정에</u>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이전에 지정하는 기한까지 추산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고,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그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</p>	<p>제7조(사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전용사용하려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③ ----- <u>규정에도</u> -----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관람권 수입에 <u>의한</u> 사용료) ① ~ ④ (생략)</p>	<p>제8조(관람권 수입에 <u>따른</u> 사용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입장료) ① ~ ② (생략) ③ 시장은 제2항의 <u>규정에</u>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.</p>	<p>제9조(입장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규정에도</u> ----- -----</p>
<p>제11조의2(입장료의 반환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행사·경기의 개최일 전 관람취소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<u>의한다</u>.</p>	<p>제11조의2(입장료의 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따른다</u>.</p>
<p>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 ~ ② (생략) 1.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<u>현저한</u> 위해발생시 2. (생략)</p>	<p>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1.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<u>뚜렷한</u> 위해발생시 2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5조(사용자의 설비 등)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<u>설치하고자 하는</u>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<u>소요되는</u>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</p>	<p>제15조(사용자의 설비 등) ----- ----- ----- <u>설치하려는</u> ----- ----- ----- <u>드는</u> ----- -----</p>
<p>제16조(운영의 위탁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별로 그 운영조건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 정하되, 위탁기간을 <u>연장하고자 하는</u>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체육시설의 운영을 <u>위탁받하고자 하는</u>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⑥ ~ ⑧ (생략)</p> <p>⑨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<u>얻거나 계약</u> 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16조(운영의 위탁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연장하려는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<u>위탁받으려는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⑥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----- ----- ----- <u>받거나 계약한 때</u> ----- -----</p>
<p>제20조(시설물 등의 설치 등)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<u>설치하고자 하는</u>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<u>얻어야</u> 한다.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.</p>	<p>제20조(시설물 등의 설치 등) ----- ----- ----- <u>설치하려는</u> ----- ----- <u>받아야</u>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부칙 &lt;제5994호, 2015.8.20.&gt;</p> <p>제2조(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)  <u>이 조례 시행 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/u></p> <p>제3조(유효기간) <u>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